

# 사찰운영 주체 ‘주지’ 아닌 ‘사부대중’ ... 인식 바꾸자

## 사찰운영위법 아십니까?

조계종이 개혁불사를 마무리 하던 1994년 10월, 중법으로 ‘사찰운영위원회법(이하 사찰운영위법)’을 제정한 사실을 아는 불자는 극히 드물다. 사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 사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당시로서도 혁신적인 법이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집행된 사항을 사찰 사부대중에게 공개하고 사찰의 재정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감시·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사찰운영위법은 현실성 확보에 실패했다. 그나마 일부에서는 사찰운영위 모범사찰로 조계사 봉은사 삼화사 법장사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등을 꼽았지만 “입법취지에 맞게 사찰운영위를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선진적 사찰경영과 포교를 위한 연구가 지상과제로 인식되는 지금, 사실상 ‘사문화’ 되다시피한 사찰운영위법이 왜 뿌리내릴 수 없었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 중도들 외면...법 강제력 없어

사찰운영위법의 핵심은 출·재가의 구분 없이 사찰을 대중공의로 운영한다는 것.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이 공동의 승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법이 현실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우선 이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중도들의 낮은 의식, 일선 사찰 현장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데서 오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계종 법무팀 김병석 변호사는 “사찰운영위법이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이 법이 종단의 관심 밖이었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법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중앙신도회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신도회는 신도법 개정과 함께 사찰운영위법 개정 등 재가자들의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법무팀을 계속해왔지만 출가자 중심의 종단에서 재가신도의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994년 제정된 조계종의 ‘사찰운영위원회법’이 단위 사찰의 외면과 법의 강제력이 없어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사찰운영위원회법 제정 취지를 살려 운영하는 몇몇 사찰이 일부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현실이다. 사진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신도회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사찰운영에 필요한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대구 영남불교대학의 회의 모습. 사진제공=영남불교대학

## 민주적 사찰운영 목표로 1994년 제정 사부대중에 재정 공개...사실상 사문화 주지 중심 구조 속 운영위 설 자리없어

신도회 임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교구본사나, 일정규모 이상의 도심 사찰이 아니라면 신도회 조직이 제대로 꾸려진 곳조차 드물다. 대부분의 주지(위원장) 스님이 신도들과 마주앉아 사찰 재정 업무를 논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사찰운영위에 대한 스님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총무원 총무부와 재무부 등 실무자들로 구성된 감사반이 사찰운영위 회의록을 요구하면 “감히 어떻게 재가자가 주지와 마주앉아 질 실림에 간섭할 수 있느냐”며 “이런 법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목청을 높여 오히려 실무자를 당황스럽게 한 적도 많다는 것이다.

중앙신도회 최현 사무총장은 “중현이 밝히고 있는 대로 ‘사부대중’으로 이뤄진 조계종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종도가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하고 “스님들 스스로 진정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재가자의 사찰운영 참여는 요원하다”며 비판적 전망을 제시했다.

사찰이 경제적으로 안정적 구조를 갖지 못한 것도 장애요인이다. 최근 종회의원 자격문제 논란을 일으켰던 모 스님은 “신도들의 시수 할어도 혼자 힘으로 납골 사업을 벌여 지금의 사찰을 일궈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질의 규모를 늘리는데 신도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스님처럼 사찰의 가장 큰 존재이유가 신도 교회를 위한 포교의 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주지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열악한 사찰의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납골사업, 국고보조, 임장료 수입 등에 의존한 사찰운영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신도 중심의 사찰운영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종단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 사찰운영위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모순된 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법의 강제력이 전혀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 공익적 운영구조 먼저 가동

사찰운영위법대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입법취지와 유사한 형태로 대중공의를 모아 사찰을 운영하는 곳은 있다. 사찰운영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1년 서울 창동에서 작은 포교당으로 시작한 법장사는 처음부터 신도들의 필요에 의해 이와 유사한 체제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각 수행단체 모든 임원이 참여해 의결과 집행을 겸하는 구조로 이들을 사찰 운영의 주체로 만든 것이다. 주지 법장 스님은 “사찰운영위는 철저한 신도 교육을 전제로 자발적 조직화를 이룩하면 진정한 대중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도 1992년 창건 초기부터 매주 화요일 핵심신도회의와 월 1회 기법정기회의, 격월로 열리는 기수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동문·신도는 언제든지 사찰의 모든 대소사에 의견을 내고 제안하며 운영에 동참

사찰운영위원회법 주요내용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조제에 의하여 본종 소속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명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 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당해 사찰과 관련한 신도회 활동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① 각 사찰은 실정에 따라 7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중략)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지는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승려 대표 1인으로 한다. 다만, 사찰 형편에 따라 신도대표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직을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6. 신도 교육 및 포교에 관한 사항
1.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신도의 자력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년4회) 정기적으로 주지가 소집한다. ② 주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사찰의 각종 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부칙(운영위원회 구성기간) ① 각 사찰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찰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를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찰이 제2항의 보고 없이 기한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는 인사상의 불이익 기타 행정상의 징계에 처한다.
3. 사찰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찰 운영에 관한 사항	

하고 있다. 회주 우학 스님은 “지난해 서문 시장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 신도들 스스로 임시회의를 열고 영남불교대학이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봉사활동은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논의하고 실천에 옮겼다”며 “참좋은유치원이 들어서는 육발보전 불사의 공사규모와 자금조달 방법도 이렇게 토의하고 공의를 모아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사찰운영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수곡사 주지 토진 스님은 최근 젊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낸 시수가 사찰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사찰운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찰운영과정의 문제점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신도들이 주지스님과 상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덕분에 총무원은 단 1명만 두고 고도 기본적으로 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도, 법회, 봉사 등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자원봉사 팀장과 팀원체제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하부조직 없이 형식적이었던 사찰운영위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현재 사찰운영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도참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신도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는 그 한계가 뻔하다. 신도들의 의식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불만이라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찰운영위 운영을 모든 사찰에 확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면 낮은 수준이라도 사찰대중의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의 큰 틀을 만들어야 사찰운영위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연덕교회’ 경우는...

서울 중정로 아세아연합신학대 서울캠퍼스 4층 연구실 한 칸을 사용하는 연덕교회(담임목사 박득훈)는 좀 고 초라했다. 흔히 ‘교회 없는 교회’의 대표주자 격인 연덕교회는 2003년 개회개회네트워크에 소속된 10여 개 교회 가운데 가장 새로운 실용적 모델의 하나로 출발했다. 매주 교인들의 예배는 이 대학 강당을 빌려 사용한다. 대신 지난해 연덕교회는 교회 수입의 30%를 사회복지 기금으로 내놓는 등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 매달 신도중심 운영위 열어 살림 규모·재정 점검, 공개

연덕교회의 이러한 실험은 양적 팽창과 성전 건립에만 매달리는 기존 대형교회들의 폐쇄적인 교회운영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출발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성직자, 목회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반성하고 민주적 교회운영에 따라 1년 임기의 운영위원회를 교회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운영을 강조한다.

연덕교회는 매달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달간 교회 살림살이의 규모와 재정을 점검한다. 회의내용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철저히 공개되고 헌금은 대부분 봉사와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조용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분원

# 지리산 원각사 선불장 통일대불 조성불사

지리산 원각사 해동선원은 국태민안과 남북통일, 세계평화 그리고 범종상잔을 지원하는 선불장 통일대불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자 원로의원이신 원각사 해동선원 조실 성수스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불사는 22자 높이의 통일대불과 아미타 마애불, 청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중국의 달마상과 18나한상, 신장님 24위 등 세계 여러나라의 부처님 100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아와법당인 선불장을 조성하는 대작불사입니다.

이번 원각사 선불장 통일대불 조성불사에 모든 불자들이 수희 동참하시어 난국을 극복하고 선공인연을 맺어 전성성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원각사 주지 泰應 定岳 합장

### 원각사 선불장 통일대불 점안 봉불식

• 2006년 8월 28일(음 윤7.5) 월요일 오전 11시

1부: 9~10시 점안 봉불 10~11시 상공 천일기도 입재 11~12시 봉불식(큰스님 법어)  
2부: 13시 (축하공연일절)

※매일 지정제일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분원 지리산 원각사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540번지 전화(055) 973-9554